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5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정점식 · 박충권 · 박덕흠
인요한 · 서천호 · 김정재
정희용 · 김도읍 · 유상범
김성원 · 구자근 · 신성범
김장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 거리,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필요한 정지시간은 50km/h에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 시간이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정지 가능성과 법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황색 신호 시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교차로 내 정체 및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간은 이른바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 불리며, 운전

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현실적인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으로 운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제36호, 제4조의3·제4조의4 및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딜레마존”이란 자동차 등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정지와 통과의 판단이 어려운 구간을 말한다.

36. “예비 정지선”이란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갑작스런 신호 변경 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저감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긋는 선으로서, 교차로의 황색신호 등화시점에 예비 정지선 바깥쪽에 차가 있었을 경우 제동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딜레마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딜레마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량 예측 기반의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과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차량 감지 시스템 등의 설치 및 개선
2. 딜레마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3. 횡단보도 횡단 잔여시간 또는 신호변화 보조장치 등의 설치
4. 기타 운전자의 안전한 정지 또는 통과 판단을 돕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정비

② 딜레마존의 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과 우선 개선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변경 시 차의 진행 가부를 판단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예비 정지선을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표시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예비 정지선의 표시·관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등화된 시점에 차가 예비 정지선 바깥쪽에 위치할 경우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예비 정지선을 지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4. (현행과 같음) 35. “ <u>딜레마존</u> ”이란 자동차 등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정지와 통과의 판단이 어려운 구간을 말한다. 36. “ <u>예비 정지선</u> ”이란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갑작스런 신호 변경 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저감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정지선 바깥쪽에 긋는 선으로서, 교차로의 황색 신호 등화시점에 예비 정지선 바깥쪽에 차가 있었을 경우 제동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u><신 설></u>	제4조의3(<u>딜레마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u>)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딜레
<u><신 설></u>	

<신 설>

마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량 예측 기반의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과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차량 감지 시스템 등의 설치 및 개선

2. 딜레마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3. 횡단보도 횡단 잔여시간 또는 신호변화 보조장치 등의 설치

4. 기타 운전자의 안전한 정지 또는 통과 판단을 돕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정비

② 딜레마존의 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과 우선 개선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예비 정지선의 표시 및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교차로에 서의 신호 변경 시 차의 진행가부를 판단하고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예비 정지

